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0 - 96호

“항만인력의 장기재직 유도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 제2차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

인천항만공사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 제2차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중소협력기업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 1명당 기업부담금 중 10만원/월, 5년간 지원

○ **(지원가능 공제상품)**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table>
<tr><th>구분</th><th>내일채움공제</th><th>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th></tr>
<tr><td>가입기간</td><td>· 5년(최초 가입시)</td><td>· 5년</td></tr>
<tr><td>가입대상</td><td>·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td><td>· 중소기업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td></tr>
<tr><td>나이제한</td><td>· 제한없음</td><td>·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
- 군필자의 경우 복부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td></tr>
<tr><td>적립금액</td><td>· 적립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 <u>기업부담금 24만원 중 10만원 지원</u>
<table>
<tr><th>기간</th><th>핵심인력</th><th>중소기업</th><th>IPA</th></tr>
<tr><td>월</td><td>10만원</td><td>14만원</td><td>10만원</td></tr>
<tr><td>5년만기</td><td>600만원</td><td>840만원</td><td>600만원</td></tr>
</table></td><td>· 적립금액: 5년간 3천만원 이상
- <u>기업부담금 20만원 중 10만원 지원</u>
<table>
<tr><th>기간</th><th>청년</th><th>중소기업</th><th>IPA</th><th>정부</th></tr>
<tr><td>월</td><td>12만원</td><td>10만원</td><td>10만원</td><td>3년간</td></tr>
<tr><td>5년만기</td><td>720만원</td><td>600만원</td><td>600만원</td><td>1,080만원</td></tr>
</table></td></tr>
<tr><td>지급이율</td><td>· 연 복리(분기별 변동금리)</td><td>· 연 복리(분기별 변동금리)</td></tr>
</table>

2. 지원대상: 인천지역 소재, 고용실적('19년 이후)이 있는 인천항 이용 중소협력기업

대분류	소분류(=사업자등록에 명시된 사업의 종류)
운송업	해상여객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육상운송업
하역업	항만하역, 육상하역
보관 및 창고업	일반창고업(아암 및 북항배후단지 입주기업에 한함),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 선박대여업, 선박 및 선원관리업, 관세사업, 포장·검량·검수·검역·감정, 예선업, 항만용역업(통선, 줄잡이, 급수, 래싱), 선용품판매업, 선박급유업

○ 참여제한: 인천항 임대료 또는 사용료 등 미납기업

3. 지원규모: 핵심인력 6명

○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IPA 지원 누적인력)

* 핵심인력 선발 시, 단시간 근무자 제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0. 7. 1. (수) ~ 7. 17. (금), 18: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에 한함**

○ 접 수 처: 인천항만공사 일자리사회가치실

- 신청양식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icpa.or.kr)에서 일자리 매칭센터-일자리 지원사업-공지사항"에서 확인

- 이메일 주소: kkh868@icpa.or.kr(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032-890-8085)

5. 선정기준: 선착순 마감

6. 작성 및 제출서류

○ 작성서류

- [붙임 1] 참여신청서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지원사업 담당자, 핵심인력)

○ 공통 제출서류

- [제출 1]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 2]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가입자 명부 제출시 주민번호 123456-7******, 성명 김**으로 지우고 제출)

- [제출 3]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발급)

- [제출 4] 핵심인력 재직증명서 1부

7. 선정결과 통지: 개별기업 유선 통보

8. 유의사항

○ IPA의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중인 기업은 사업참여 제한 될 수 있음

- (예시1) 현재 지원받고 있는 인력이 2명인 경우 → 신청 불가

- (예시2) 현재 지원받고 있는 인력이 1명인 경우 → 1명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지원받고 있는 핵심인력 수가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항만공사 지원금은 가입기업과 핵심인력이 **1년 단위 정상납입 확인 후 연 단위로 지원금 지급**됨을 알려드리며, 동 사업비의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을 통해 지급**되는 사업으로 **정상납입 확인 후 지급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됨**

○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으로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약관"에 의거 공제가입 제한** 시 **인천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선정기업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사후관리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내일채움공제 선정기업 지원금은 **5년간 지원**하되, **연단위로 정상 납입 현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일자리사회가치실	032-890-8085	kkh868@icpa.or.kr

○ 붙임 1. 공제상품별 가입제한
2.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안내

[붙임 1] 공제상품별 가입제한

○ 항만공사 선정기업이라도 공제 가입제한 사유 해당 시 지원 제외됨

공제 가입제한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제한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붙임 2] 공제계약의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안내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중소기업의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핵심인력의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핵심인력	핵심인력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핵심인력 귀책	◦핵심인력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핵심인력
	◦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기타		
기타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핵심인력
	◦핵심인력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핵심인력	핵심인력